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 총 84개 국가 · 지역 -

2023.4.4.(화) 17:00 외교부

국가지역별 가나다순

-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22.7.1.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디지털증명서(EU DCC)와 동등하게 취급**
*스위스의 경우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야 해서, 시일이 추가 소요될 예정

1 입국금지 조치 : 19개(17*) 국가 · 지역

*19개국 중 17개국은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구분		조치 사항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 · 공무 · 기업 활동 등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관계 당국이 공식 초청하는 경우에만 비자 발급 - 관광비자는 발급 제한 ▶ 입국 시 PCR 음성 결과(입국 48시간 이내) 및 백신접종증명서(1차 접종 후 42일 이상 경과)를 지참하여야 하며, 입국 후 7일 간의 격리조치 시행
아프리카	카메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4.30.) ※ 카메룬 입국시 PCR 음성 결과(입국 48시간 이내) 및 백신접종증명서 제출할 경우 코로나19 음성결과 제출 불요. 단, 코로나19 백신미접종자의 경우 도착기준 3일(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 제출 필요(22.10.4부터) - 아운데두알라 공항 도착 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양성판정 시 지정 의료시설 격리(검사비용 카메룬 정부 부담, 격리 비용 자부담) ※ (카메룬 출국시 조치) 출국자의 최종도착지 요구서류(PCR음성결과지등) 카메룬 공항에서 제시필요(22.4.7부터) - 카메룬 내 PCR 1회 비용 : 30,000XAF(약 50USD)

◇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 17개 국가 · 지역

구분		조치 사항
	나우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 항공기 탑승 24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나우루 외교부 이민국 담당자(rajeevnauruimmigration@gmail.com)에게 메일로 입국 사전 허가 취득 (입국 사유 및 왕복 항공권 승부) - 나우루 도착후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 검사에서 양성 확진될 경우 13일간 정부 격리시설 수용
아시아 · 태평양	니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6.27.-) 니우에-뉴질랜드 간 무격리 트래블버블 시행 중이며, 해외 방문객 입국은 뉴질랜드 경유를 통해서만 가능 ※ 30일 미만 체류 시 별도 비자 불요. 단, 뉴질랜드 경유 시 환승용 NZeTA 발급 필수 (입국요건) ※ (만 16세 이상) 백신접종증명서(2차접종 완료) 제출 - 전자문서 인정(여권 상 영문명과 일치해야 함) ※ (모든 연령) 입국 전 코로나19 사전 검사 제출 의무 폐지(23.2.10.-) - 입국 후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숙소에서 7일 자가격리 의무 실시 ※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 보험내용에 medical treatment, travel disruption 등 코로나19 관련 조항 포함 권고 ※ 입국 전 니우에 여행자 신고서(Niue Travellers Declaration Form) 등록 필수. 미등록 시, 탑승 불가 - Niue Travellers Declaration Form : 니우에 정부 웹사이트(www.covid19.gov.nu)에서 백신 정보 등을 등록한 후, Travel Pass 발급받아 입국 가능 ※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 확진 판정일로부터 7일간 입국 제한 (입국 시) ※ 입국 후 1일차와 3일차에 Niue Ffoo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 의무 실시(병원 운영시간: 9:00-12:00) - (검사 예외대상) 3세 미만 영유아
	솔로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입국 허가 폐지(22.10.12) ○ 모든 외국인의 경우(12세 이하 청소년 제외) 솔로몬제도 입국 4주전 백신 접종 완료해야 하며, 솔로몬제도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12세미만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을 미접종한 경우는 입국 72시간전 PCR Test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함 ○ 권장사항 -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 N95마스크 항상 사용 필수 - 대규모 행사 참석시 코로나19 검사(PCR 또는 자가진단 키트 검사)관장

구분	조치 사항
인도네시아	<p>△ 입국 외국인 필수 제출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전 최소 14일 이전에 백신별 2차(안센은 1차) 또는 3차 접종완료한 접종증명서 - 퍼들린동이 앱 설치(인증여부는 관계 없으며 업로드하고 승인 대기상태면 충분함) <p>△ 격리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접종 미완료 접종자는 기본적으로 입국이 제한되며, 건강상 접종을 못한 경우 국립병원(중앙의료원, 국립대학 병원, 경찰병원, 지자체 의료원) 의사 소견서와 pcr 음성 결과지를 갖고 입국할 수 있으며 무격리 ※ 2차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코로나 확진 후 완치 판정자: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이상 코로나19 전파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명시된 출발국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 혹은 출발국 보건당국의 완치 증명서를 소지 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 위 사항은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면제일 뿐, 호텔 등 격리 면제를 위한 규정이 아님 - 2차 접종 완료자 / 3차 접종자: 무격리 * 2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후에 입국 시 유효 * 2차 접종후 유효기간 없으며 3차는 즉시 입국 가능 * 18세 미만 아동은 그 부모/보호자에 적용되는 기준 적용 <p>△ (입국후 PCR 검사) 유증상자와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증상이고 체온이 37.5도 미만이면 추가 PCR 검사없이 이동 가능 <p>△ 인도네시아 입국 도착비자 제도 재개 시행(4.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 전자 도착비자 제도 재개 시행(11.9) ○ 22.4.6일부터 자카르타, 수라바야, 메단 등 15개 공항 입국자 도착비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귀국 또는 제3국행 비행기 티켓 - 18세 미만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간 체류 가능하고 1회 30일 연장 가능, 출국은 다른 공항을 통해서도 가능 ○ 22.11.9일부터 자카르타, 발리 입국자 전자도착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만 2개 공항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사항은 기존 도착비자와 동일 * 이민국 웹사이트(molina.imigrasi.go.id)를 통해 신청, 결제 가능 ** 입국 2-14일 전 신청 권장
마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마이크로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 코로나19 건강 확인서(Health Clearance Declaration) 양식 제출
키리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구분	조치 사항
통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7.-) 국경 전면 재개방 <p>(입국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2세 이상) 백신접종증명서(2차접종 완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접종증명서는 출국 48시간 전 통가 보건부(travel@health.gov.to)에 이메일 제출 필수 - 출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서류본 제출 ※ (모든 연령)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폐지(9.27.-) ※ 통가 체류 시 숙소 예약확인서는 출국 48시간 전 통가 보건부(travel@health.gov.to)에 이메일 제출해야 하며, 출국 시 제출 ※ 통가 정부에서는 해외방문객 대상 여행자보험 가입을 적극 권고(숙소 예약 시 구매 가능) <p>(입국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7.-) 입국 후 3-5일차 코로나19 검사 폐지 ※ 통가행 항공편 탑승 중 입국신고서 작성 필수(현지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필수 입력) <p>(예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출국 48시간 전 통가 보건부(travel@health.gov.to)로 백신접종 예외 신청 가능(사유 명시된 의사소견서 첨부) 통가 보건부에서 의사소견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입국 거부 가능 <p>(환승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2세 이상) 백신접종증명서(2차접종 완료) 제출
투발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1차 추가접종(부스터샷) 포함) 제출
팔라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 가능(다만, 아래 조건 충족 필요) ※ 출발 전 14일 이전 WHO 또는 FDA가 승인한 백신접종 완료 ※ 출발 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1일 이내의 항원 검사(WHO, FDA 승인 제품) 음성 결과 / 또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 ※ 입국 후 시설격리 의무는 없으며, 입국 4일째 PCR 검사를 받기까지 능동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입국 후 4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받아 양성 확인 시 자가격리로 전환(증상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 가능)

구분		조치 사항
미주	미국	<p>▶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1.8.부터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 실시</p> <p>※ 22.6.12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닌 만 18세 미만도 동일하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불요</p> <p>※ (백신접종완료 기준) 미 FDA 또는 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료, 한국의 교차접종자도 백신접종 완료자로 인정</p> <p>※ 백신접종 증명은 디지털방식(예: 한국의 COOV앱)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p> <p>- 백신접종증명서에는 개인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가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음 (예: QR 코드가 있는 백신접종증명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디지털 패스, 국가/지방정부/공인 백신 제공자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출력물, 백신접종카드 또는 기록의 디지털 사진, 공식 백신 제공자에서 다운로드한 백신접종기록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등) ※ A비자 소지자 등 아래 표기된 예외 적용 가능 대상 이외에 예외 인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백신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로부터의 방문객 등에 대해 제한적 적용</p> <p>-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입국 가능한 백신접종 미완료자) : △외국 공무원 및 직계 가족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등), △TECRO 또는 TECO의 직원 또는 직계가족(E-1), △G-1, G-2, G-3, G-4, NATO-1~4 및 6 등, △여행이 유엔본부 협정 제11조의 범위에 속하거나 미국의 법적의무에 따라 여행하는 경우, △해당 연령 그룹의 개인에 대한 전 세계 백신 가용성을 고려하여 CDC 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백신접종이 필요한 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특정 임상시험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자, △인도주의적 또는 긴급 상황을 위해 CDC 국장이 예외를 승인한 자, △미군의 일원인 외국인, 미군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자녀, △C-1 및 D 등 선원으로 입국하려는 자, △미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에 의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등</p> <p>※ CDC는 미국 입국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백신접종 미완료자를 대상으로 도착 후 5일 자가격리 및 3~5일 안에 진단검사 실시 요구(서약서에 포함된 내용)</p> <p>▶ 21.11.8.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캐나다, 멕시코 국경지역 육로 입국 제한 해제</p> <p>※ 18세 미만 어린이 예외 인정</p> <p>※ 백신접종완료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p> <p>▶ 현재 미국 본토 내 대다수 주는 CDC 공통 방역지침 외 의무조치를 별도 부과하지 않으나, 주에 따라 또는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방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해당지역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필요</p>

구분		조치 사항
	수리남	<p>※ 2022.6.20.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p> <p>▶ (백신 미접종 또는 불완전접종자) 예외적으로 ①내국인(거주자) ②외교관 ③중증환자의 경우 수리남 외교부(conza@gov.sr)에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p> <p>- 황열병 국가 경유(출발)자는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도착 10일 이전에 발급) 제출</p> <p>▶ (백신접종완료자*)</p> <p>-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 감염 후 회복(6개월 이내) 증명서' 제출, 합법적 여행서류 필수 소지, 최소 30일 보장 여행자(코로나)보험</p> <p>- 황열병 국가 경유(출발)자는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도착 10일 이전에 발급) 제출</p> <p>* 백신접종완료자: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교차접종 불인정) 접종자, 백신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18세 미만은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예외</p>
유럽	아제르바이잔	<p>▶ 2023.5.1.까지 국경봉쇄 조치가 연장되었으며, 외국인은 다음 조건 모두 충족 시 입국 가능</p> <p>△영문백신예방접종증명서(18세 이상에 한함)</p> <p>△내각의 특별승인(permission from the Operational Headquarters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p> <p>- 우리국민은 2021.10.15.부터 내각의 특별승인 없이 항공 입국 가능하며, 바쿠 공항에서 e-Visa 신청 가능</p> <p>※ 단, △근로허가(work permit),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보유자 △가족 구성원 및 친인척 중 아제르바이잔 국적자가 있는 경우 내각의 특별승인 및 백신접종증명서 없이 입국 가능</p>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p>▶ 2023.1.24.부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영문) 의무 제시</p> <p>▶ 백신접종 여부 불문, 사전/사후 PCR 검사 전면 유예</p> <p>▶ 입국허가와 QR 코드 제출은 불요하나, 주재국 포털 사이트에 건강상태 사전등록 (https://nitp.ncdc.gov.ng) 권장 / 출발 前, 기내, 입국장에서 작성 가능</p>
	라이베리아	<p>▶ (입국 전) 출발 전 준비사항,</p> <p>* 라이베리아 도착 시, 18세 이상 모든 여행자는 백신접종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함.</p> <p>▶ (입국 후) 라이베리아에서 출국 시, 백신 접종완료 권장, 출국하려는 국가의 코로나19 방역규정에 따른 요구서류를 갖추어야 함.</p>
	이라크	<p>이라크는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p> <p>※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불요/코로나19 백신증명서 지참 권고(입국시,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p> <p>※ 한국 국적자에 대한 여행금지구역인바, 예외적 여권 사용허가서 지참 필수</p> <p>▶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쿠르드 지역 입국제한 조치 강화(23.1.15부)</p> <p>- 도착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p>
중동	이란	<p>※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영문 증명서(2회) 제출(13세 이상) 또는 PCR 음성확인서(출발 72시간 이내 실시) 지참</p> <p>- 백신 접종 완료(fully vaccinated) 후 최소 14일 경과(백신 종류 무관)</p> <p>※ 이란 입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PCR 검사, 격리 실시 (검사 및 격리 비용 자부담)</p> <p>※ 12세 이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불필요</p> <p>※ 디지털 접종증명서에는 QR코드 포함 필요</p> <p>※ 2021.10.27.부터 관광비자 발급 재개(단, 여행을 통한 발급 권장)</p>

② (시설)격리 조치 : 해당 국가 없음

③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 65개 국가 · 지역

※ 사증 발급 중단,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구분	조치 사항
아시아 태평양	<p>네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3.10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백신접종 완료 영문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 시 영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시설(자가)격리 불요 * WHO 승인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교차 접종 인정) / 백신 종류와 회사별 접종일자 기재(부스터샷 접종 불요) ※ 단, 일부 항공사 및 경유국가가 이용 시 PCR 결과 요구 가능 ▶ 백신 미접종 또는 백신접종 증명서 미소지의 경우 출발 72시간내 발급된 영문 PCR 음성확인서 소지 시 도착비자 발급, 시설(자가)격리 불요 ※ 5세 이하 PCR 검사 면제
	<p>뉴질랜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NZeTA(전자여행허가) 신청 ※ (6.22~) 해외입국자 대상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 (9.13~)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 (주재국 권고사항) 입국 시 공항에서 제공받은 RAT 키트로 도착 0/1일차 및 5/6일차에 검사 실시하고, 주재국 보건부에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 판정 시 7일간 자가격리 실시 필수 ※ (뉴질랜드 환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승비자 또는 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까지 공항 내 환승구역에서 대기 가능(24시간 초과 시 별도 입국비자 필요) - (6.21~) 환승객 대상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및 NZTD 등록은 폐지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없는 경우 뉴질랜드 경유 불가 ▶ 상기 내용은 뉴질랜드 입국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항공편 실제 탑승 가능 여부는 사전에 해당 항공사 측과 필히 확인 요망
	<p>대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9.29.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입국 허용 ▶ 대만 입국 후 방역조치(23.2.7.부터 부터 적용) ※ 7일간 일반호텔 및 자가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를 실시할 경우 1인 1실(욕실 겸비 필수)이 원칙 - (공항에서 호텔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 대중교통, 방역차량, 친인척 차량, 자차 모두 이용 가능 - (자발적건강관리기간)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실시
	<p>동티모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민항편 운영 중지, 비정기 민항기만 운항(21.5.7.) ※ 외국인 입국 가능(도착비자 제한 없음) ※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는 접종증명서 제출 시 격리면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백신미접종자는 10일 자가격리 ※ 백신 미접종자 중 접종 불가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가 발행한 사유서 제출 필요

구분	조치 사항
아시아 태평양	<p>미카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국가(대한민국 포함)에서 입국시(홍콩 경유 입국하는 경우 포함) - 출발 48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24시간내 실시한 자가/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서를 소지 ※ 신속항원검사(RAT)는 전문가용 또는 자가진단키트 모두 가능하며, 검사결과를 마카오 정부 Platform에 신고 또는 마카오 건강 코드에 입력하여 제시할 것 ※ 마카오 정부 RAT Reporting Platform(https://eservice.ssm.gov.mo/generalrat) ※ 마카오 건강 코드 발급(ssm.gov.mo) - 홍콩을 통해 입경 시, 강주아오대교 운행 버스 또는 홍콩-마카오 페리 예약 필요 - 여행 경비로 5,000 MOP 이상의 지불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현금, 전자지갑 등) ▶ 중국, 홍콩, 대만에서 입국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요 - 홍콩을 통해 입경 시, 강주아오대교 운행 버스 또는 홍콩-마카오 페리 예약 필요 - 여행 경비로 5,000 MOP 이상의 지불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현금, 전자지갑 등) ※ 입국 관련 상세 정보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p>몰디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22.3.14) ※ 모든 입-출국자는 백신접종 여부 불문, 몰디브 보건부 온라인 시스템(IMUGA)을 통해 건강진단서를 입-출국 72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몰디브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결과지 제출이 불필요 ※ 단, 일부 항공사 및 경유국가 이용 시 PCR 결과 요구 가능, 코로나19증상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음. ※ 여행관련 격리 불요
	<p>미얀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방역조치(22.10.8.-) ※ 입국 시 구비 서류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접종증명서(입국 전 14일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종류 : 기존 WHO 긴급승인 백신 10개 종 + 노바백스 누백소비드(Nuvaxovid) * 만 12세미만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면제 - (백신접종미완료자) PCR 음성 확인서(48시간 내) - (공통 구비 서류) 미얀마 국영보험 또는 여타 코로나19 관련 보상이 포함된 보험 가입증서(영문) ※ 미얀마 국영보험 : (www.mminsurace.gov.mm -> General Insurance->Inbound Travel Accident Insurance)에서 가입 가능 ※ 여타 보험 : 주한미얀마대사관 문의를 통해 인정여부 확인 가능 (전화 : 02-790-3814-6, 이메일 : seoul-embassy@mofa.gov.mm)
	<p>방글라데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 ▶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안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 ▶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에 RT PCR 기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후 입국 가능 ▶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2세 미만 승객은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필요 ▶ 한국, 중국 등 8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22.12.26.부) - 예방 접종여부에 관계 없이 도착 여행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감지되면 보건 당국에서 RT-PCR 코로나19 검사를 받게되며,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정부 지정 호텔 등 시설로 이송됨(이때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임), 다시 7일 후 RT-PCR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음성일 경우 퇴원하게 됨

구분	조치사항
부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탄 입국 시 사전에 반드시 비자 취득 필요 - 입국시 Covid19 관련 RT-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다만, 입국장 등에서 무작위로 PR-PCR 테스트가 실시 될 수 있음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1.15.부터 외국인의 개별관광 비자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관광목적의 인도방문 가능 - 기존 발급된 5년 유효의 관광비자의 경우 22.3.15.부 효력 재개 ※ 전자비자(e-visa)신청 및 도착비자 신청 가능 ▶ 공항으로 입국하는 2% 인원외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22.12.24.부) - 양성 확인시 자가 격리 조치 ▶ (주재국 권고사항) 공항 도착시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7일간 자가격리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10.11.부터 일본 입국전 준비하실 서류 - (공통) Visit Japan Web을 통하여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PCR음성확인서 등록 이후 입국시 심사원료 화면(QR코드) 제시(https://www.vjw.digital.go.jp) ※ 도착예정 2주 전부터 최소 6시간 전(선박의 경우 24시간 전)까지 등록 필요 ※ 백신접종여부에 따라 심사원료 화면은 청색 또는 황색으로 표시 - (백신접종완료자)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 시, PCR검사 음성증명서 제출 불요 - 접종증명서는 ▲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제조사, ▲백신 접종일, ▲백신 접종 횟수가 영어 또는 일본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아래 유효한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해야 하며, 교차접종도 허용 ※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안센(1회 접종을 2회분으로 간주), 노바백스, COVAXIN, COMIRNATY, Covishield, COVOVAX ※ 국내 도입된 동절기 추가접종 2가 백신 인정 - (백신접종미완료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탑승하실 비행기 출발 시간 72시간 이내에 검사(검사 채취)한 PCR 음성확인서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하는 검사증명서 양식은 국문 또는 일본, 지정양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검사방법, 채취검체, 검사결과, 검체채취 일시, 결과판명일, 검사증명서 교부연월일,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의사명, 의료기관 관인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양식의 증명서 제출도 가능(상기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될 것) ▶ 미성년자 입국에 관한 사항 -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유효한 백신접종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PCR음성확인서를 통해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입국하는 경우) 동반하여 일본에 입국하는 미취학(만 6세미만) 아동의 경우에만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3.1.(수) 지정부터 적용) -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발 입국자 대상 출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 (4.5.(수)부터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 해제) -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발 직항 항공편 입국자 20%에 대한 무작위 표본 검사 실시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후생노동성 콜센터 문의 가능 - 일본 국내에서는: 0120-248-668(일본어), 050-1751-2158(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대응)

구분	조치사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02.18.부 중국 방문자 대상 단기비자(방문, 상업무역 및 일반 개인사정 포함) 발급 재개 ▶ 23.03.15.부 중국 관광비자 심사/발급 재개 ▶ (입국 전 검사) 중국 방문 예정 인원은 출발 전 48시간 내 PCR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세관 건강신고서에 작성 /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음성 전환 후 입국 가능 - 건강신고서링크(https://htdecl.chinaport.gov.cn/htdeclweb/home/pages/healthDeclare/declare.html) ※ PCR검사 음성확인서 요구사항 1) 필수 기재 정보 : 이름, 검사 시간, 검사방법(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항원 검사는 인정되지 않음), 검사 기관명 및 연락처 2)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항공사가 이를 심사 3) 종이 결과지 지참, 전자문서로 발급한 경우 인쇄후 지참 - (입국 검역) ① 해외 입국자 전원 대상 PCR검사 폐지 ②건강신고서에 이상이 없고 세관 정규 검역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자유로운 이동 가능 ③건강신고서에 이상이 있거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인원 대상으로 세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1)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심각한 기저질환 합병증이 아닌 무증상감염자 또는 경증 환자의 경우 자가(거주지) 격리 또는 자가 치료를 실시하며, 기타 상황의 경우 가급적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 · 2) 결과가 음성일 경우, 세관 <국경위생검역법> 등 법률법규 관례에 따라 일상적 검역 실시 - (국제 항공편) 각 항공사는 항공기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승객은 항공편 탑승 시 마스크 착용 필요 ※ 중앙 발표에 따른 구체 시행 일자 및 계획 등은 각 지방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주중한국대사관 및 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파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9.1.부터 입국시 항공편 탑승전 Pass Track 앱내 개인정보 입력 잠정중단 ※ 단, 입국시 백신접종완료증명서 혹은 (12세 이상의 미접종자의 경우) 항공 탑승 72시간 전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구분	조치사항
필리핀	<p>□ 백신접종완료 및 부스터샷 접종자(15세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접종 완료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JA, CSP) 또는 WHO의 승인 (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외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 WHO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p>※ 출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은 불요</p> <p>□ 백신미접종자, 접종 미완료자, 접종완료 증빙이 불가한 경우(15세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 48시간전 시행한 PCR 검사 또는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검사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negative laboratory-based rapid Antigen Test)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불가시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시행 * 양성 판정시 필리핀 규정에 따라 격리 조치 <p>□ 15세 미만자가 백신 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여행을 동반하는 성인(부모 등)과 동일한 수칙을 따름</p> <p>□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 필요</p> <p>□ 무비자 등 단기 방문의 경우 출국 항공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필리핀인 배우자, 자녀 등 Balikbayan 적용되면서 필리핀 가족과 같이 입국하는 자는 제외 <p>□ 기존 무비자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보험가입 요건은 폐지</p> <p>□ eTravel 등록(기존 One Health Pass 대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입국자의 출발전 입국 정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온라인 플랫폼 eTravel (https://etravel.gov.ph) 등록 필요
홍콩	<p>▶ 공통적용(홍콩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RAT) 자가/전문가 신속항원검사 또는 48시간 내 검사한 PCR 검사 음성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T 자가진단키트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여 검사 후 이름, 검사한 시간 및 날짜, 검사 결과가 표시되도록 사진으로 찍어 최소 90일 보관(홍콩 입국 시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시해야함) ※ 홍콩정부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개인정보, 여행정보, 코로나19 확진 기록, 코로나19 백신접종기록 등 작성 -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링크(https://www.chp.gov.hk/hdf/) ※ 입국 후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6일차까지 매일 RAT 자가진단키트로 검사(권고사항) ※ 만 3세미만 코로나19 검사 예외 인정 <p>※ 입국 관련 상세 정보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p>

구분	조치사항
니카라과	<p>▶ 2022.6.16.부터 니카라과 입국을 위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요건을 폐지하되, 입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카드(실물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완료 : 백신 2회 접종(동일백신 또는 혼합백신)한 경우. 단, Sputnik Light와 J&J/Janssen 백신의 경우는 1회 접종한 경우 ○ 인정 백신 : WHO 승인 백신 및 니카라과에 등록된 백신 (Pfizer, Moderna, AstraZeneca, Covishield, Janssen, Sinopharm, Soberana02, Abdala, Sputnik V, Sputnik Light, Coviran) ○ 접종 연도 : 상관 없음 ○ 입국시 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카드(종이 등 실물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 형태) 제시 ○ 육상, 해상, 항공 등 니카라과 국경에서 공통 적용되며, 승객 및 승무원 모두 해당 <p>▶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RT-PCR 테스트 음성결과서를 입국시 제시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 및 성인, 그리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모두 PCR 음성결과서 제시 필요 ※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RT-PCR' 또는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표기 필요 ※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출발지는 입국 96시간 내 시행한 음성결과서 계속 인정 ※ 항공권 구매 여행사 및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탑승 및 입국 관련 상세 안내문 사전 확인 필요
도미니카 공화국	<p>▶ 입국자에 대해 랜덤방식으로 코로나19 신속 검사 실시(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유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p> <p>※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필수</p>
멕시코	<p>▶ 입국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p> <p>※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 △경증시 자가격리, ▲중증시 입원조치</p> <p>▶ 멕시코-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p>
미주 바하마	<p>▶ 탑승 전 5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PCR) 음성결과서 제출(비 접종자)하고 4박5일 이상 체류자는 5일 이내 코로나 신속 검사 의무</p> <p>※ 백신접종자(AZ, 화이자, 모더나, 안센)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면제</p> <p>※ 모든 18세 이상 여행자는 헬스비자 신청의무</p>
베네수엘라	<p>▶ 2023.1.1.부터 아래 입국절차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접종증명서(접종완료)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 디지털(QR코드) 또는 다른 유효한 형태 - 입국일 최소 14일 이전에 백신접종 완료 - 접종완료 후 270일이 경과한 경우 추가접종(부스터샷) 필요 ○ 백신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도착 72시간 이전에 발급된 PCR-RT 음성확인서 필수
벨리즈	<p>▶ 2022.2.15. 이후 모든 입국자는 벨리즈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자보험 가격은 미화 10불이며, 벨리즈 국제공항 또는 육로 이동시는 국경에서 구입 가능 (코로나19 확진 시 3주간 치료비 중 미화 5만불 이내, 격리 숙박비 2천불(일 300불 한도) 이내 보장, 상세 내용은 벨리즈 관광청 웹사이트 확인) - 벨리즈 국민, 승무원, 영주권자는 제외 <p>▶ 입국시 세관증명서와 여행자보험 제출 필요</p> <p>▶ 코로나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입국 시 코로나검사 음성확인서 필요없음(단, 백신증명서 원본 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Rapid Antigen검사 음성확인서" 를 제출해야 함 - 단, 육로 및 해상으로 벨리즈에 입국하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도착 후 벨리즈 정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 수검 필요(자부담)

구분	조치사항
볼리비아	<p>▶ 2022.4.27.부터 아래 입국절차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세 이상 모든 내외국인 대상 아래 입국요건 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2차 백신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또는 스페인어) 지참 2.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완료자(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영문 또는 스페인어) 결과서 지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입국의 경우,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 육로, 선박 입국의 경우, 볼리비아 도착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또는 ② 입국 시 코로나19 항원(Antigen) 음성(영문 또는 스페인어) 결과서 지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입국의 경우, 항공편 출발 전 48시간 이내 항원 검사 실시 - 육로, 선박 입국의 경우, 볼리비아 도착 전 48시간 이내 항원 검사 실시 3. 기존에 시행되었던 자가격리 의무 및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치료 보장 여행자 보험증명서 제출 의무 해제
브라질	<p>▶ 항공(20.7.29), 육상(21.12.9), 해상(2022.4.1.)을 통한 입국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각 운송수단 탑승 전 운송 서비스기관에 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방접종증명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 세계보건기구 또는 접종 국가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 완료(안센 1회, 그 외 백신 2회) 후 14일 경과해야 함. * 브라질 보건당국은 안센 1회 및 그 외 백신 2회 접종을 1차 접종 계획(esquema vacinal primario) 이라고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접종 계획에 대한 정의 및 해석 여지를 고려하여 언론 등을 통해 상기 내용 전파 - 참고로 부스터샷, 2가 백신 등이 2차 접종계획(dose de reforco)에 포함 - 접종증명서에는 접종완료자 이름, 백신명 또는 제조사, 로트번호, 접종 일자 포함 필요 - 인쇄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시, QR CODE 또는 기타 암호화된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2. 음성확인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 -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탑승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 한해서만 유효 3. 예방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제출면제 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2세 미만 아동, 화물운송 근로자, 항공 승무원 - 상호 대우가 보장되는 쌍둥이도시 국경거주자 등 - 사전 입국 승인없이 인도적인 사유로 입국하려는 자(예 : 난민 등) - 사전에 승인받은 국경 간 인도적 활동 수행 중인 자 4.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자는 최소 14일 간격으로 2회 실시한 RT-PCR 양성 확인(두 번째 검사는 탑승 하루 전 실시)과 무증상에 여행이 가능하다는 여행일자가 포함된 의사소견서(의사 서명 필요)를 예방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로 대체 가능 - 단, 완치증명서는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p>※상기 제출 서류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 중 제시</p>
세인트루시아	<p>▶ 9.5.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 전면 해제</p> <p>(▲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불요, ▲백신 접종 불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입국 전 작성한 건강확인서(Health Screening Form)*는 제시 필요 * 정부 홈페이지(stlucia.org/en/covid-19)에서 다운받아 작성
세인트키츠네비스	<p>▶ 8.15.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 전면 해제</p> <p>(▲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불요, ▲백신 접종 불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입국 전 온라인 입국 신고서* 작성 필요 * knatravelform.kn 에서 작성

구분	조치사항
아르헨티나	<p>▶ 21.11.1.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국경 개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은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아르헨티나 입국 시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나, 안전한 입국을 위해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권고 ※ (비영주 외국인 입국 시 준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헨티나 체류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비용(격리, 입원 등)을 제한 없이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 권고 ※ 22.4.7.부터 입국시 코로나19 진단 확인서 제출 규정 폐지 ※ 22.8.26.부터 입국 전 입국서약서 제출 규정 폐지
아이티	<p>▶ 21.2.9.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 발열체크 및 연락처 제출 실시 중
온두라스	<p>▶ 입국 전 이민청 홈페이지(https://prechequeo.inm.gob.hn) 통해 입국 신청 필요(통상 입국 1-2일 전부터 신청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신속항원검사) 또는 백신접종증명서(백신 종류 불문, 필수 접종횟수 모두 완료) 제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경우시에도 제출 필요 ※ 황열병 감염 위험 국가에서 출발(경유지 포함)하여 온두라스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필요(예방접종 유효기간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미카리브 : 파나마, 트리니다드토바고 - 남미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 아프리카 :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감비아, 가나,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토고
우루과이	<p>▶ 23.3.1.부로 아래 조건 충족 외국인의 입국 허용 및 격리 면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루과이에서 통용되는 건강보험(여행자보험 등) 소지 필요 2)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시 불요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10.01.부터 적용 사항 ▶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또는 스페인어) 또는 출국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지참(비 거주 외국인) - 거주 외국인은 동일하게 상기 2개 항목 제출 의무사항 아님 ▶ 통행증(Pase de Movilidad)(거주, 비 거주 동일)은 백신접종증명서로 대체 ▶ 칠레 입국자에 대한 무작위 코로나 검사 ▶ 여행자보험 가입 권고 ▶ 관광무사증 입국자 대상 무작위로 체류비용 소지 증빙서류(은행 잔고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p>※ 중국 본토발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강화(23.1.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화 및 항공기 탑승 전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입국자 코로나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5일간 시설격리

구분		조치 사항
	파라과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2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증명을 제출해야 함. 동 증명서는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에 한해 인정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접종완료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회 접종 (2회 접종, 1회 부스터샷 접종) - 2회 접종 (2회차 접종 완료 6개월 이내) - 1회 완료 백신(접종 3개월 이내) ▶ 12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 포함)는 탑승 72시간 전 발급된 RT-PCR, LAMP, NATT 방식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콜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롬비아 입국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콜롬비아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출국 시에도 작성 필요) ▶ 2022.05.01.부터 콜롬비아에 입국하는 18세 이상 모든 사람은 콜롬비아 입국 14일 이상 전에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백신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입국 항공기 탑승 가능(육상, 해상 등 모든 이민청 입국장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백신접종 증명서가 없는 경우 콜롬비아 입국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진단 또는 48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진단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유럽	우크라이나	<p>우크라이나는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6.7.부터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코로나19 진단 PCR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WHO 인증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중 1가지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의무 면제 대상 : 12세 미만 어린이, 영주권자, 駐우크라이나 외교관가족, 정부 대표단, 난민 등 ▶ 21.8.5.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미완료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은 입국 후 72시간 이후 10일 자가격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미접종/미완료 외국인은 “브도마(Vdoma 또는 В д о м а)” 자가격리 모바일 앱을 설치 및 실행해야 입국 가능 ※ 입국 후에 실시된 코로나19 진단 PCR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동 자가격리 면제 또는 중단 ※ 동 자가격리 면제 대상 : 18세 미만 미성년자, 정부대표단, 駐우크라이나 외교관가족 등 ※ 우크라이나 입국 직전 14일 중 7일 이상 러시아에서 체류하거나 러시아에서 출발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미완료 외국인들은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시행(자가격리 면제 또는 중단 불가능) ▶ 외국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치료비용(격리비용 포함)을 처리할 의료보험 소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의무면제대상 : 영주권자, 駐우크라이나 외교관/가족, 정부대표단, 난민 등 ▶ 21.12.3.부터 우크라이나 입국 직전 14일 중 7일 이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 (경유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입국금지 면제 대상 : 임시거주증 소지자, 영주권자,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우크라이나 주재 외교관가족 등 - 동 입국금지 면제 대상자는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시행
	중동	<p>리비아는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국적자에 대한 여행금지구역인바, 예외적 여권 사용허가서 지참 필수

구분		조치 사항
	모리타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9.10.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입국 요건(비자 발급 등)에 더해 입국 시 △입국 전 3일 이내(공인된 검사소에서 발급받은 시점 기준)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시(외국인의 경우 음성확인서 미구비 시 입국 불허), △체온 측정, △건강자가진단서 제출 ※ 공항 도착 시 유증상(발열)인 경우 현장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보건당국 조치에 협조 ※ 번이 바이러스 발생국(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에서 출국한 경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입국장소에서 임시 격리, 방역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재국 정부 지정 격리 장소로 이동 후 10일간 의무 격리(비용 자부담), 10일 격리 후 PCR 검사 결과 음성 시 귀가, 양서 시 보건당국 조치에 따름 ※ 경유승객도 상기와 동일한 지침 적용
	알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3.20.부터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WHO 긴급승인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안센, 시노백,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코비실드, 코백신) 3차 접종 완료 또는 2차 접종 후 9개월 이내 접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백신 미접종 및 1차 접종자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3.1.부터 외국인 입국 전면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대상 : 백신 접종여부와 무관, 오렌지국가*에서의 입국자 * 레드국가(현재 해당국가 없음) 이외의 모든 국가는 오렌지국가로 분류 ▶ 입국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VID-19를 포함하고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증서 필수 제출 ※ 22.10.9.부터 입국 전 온라인 입국신고서 제출 의무 폐지 ※ 22.5.21.부터 공항, 해상 및 육로 국경을 통한 이스라엘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 해제/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공항 내 PCR 검사와 격리 의무 폐지
	카타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출발 48시간 이내(within 48 hours of the time of departure to the State of Qatar)에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를 공항 체크인시 제출 필요 (카타르 국민, 거주자, 여행자 전원 해당, 백신 접종 여부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타르 시간 1.3.(화) 오후 6시부터 적용 ▶ (그 외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객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 불요 및 사전 Ehteraz 입국 허가 신청 불요 /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불요 - 왕복항공권 및 체류 기간 호텔 예약증 제시 필요 ▶ 2023.2.1.부터 모든 방문객은 카타르 도착 전 의료보험 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가입 방법 : 카타르 도착 전 Ministry of Public Health 사이트에서 가입 또는 Metrash 어플리케이션에서 최소 50리얄 상품부터 선택 가능 - 보험 기간: 카타르 입국 날짜부터 30일간 유효 - 보험기간 연장 필요 시, 재가입 필요 * Ministry of Public Health 허가 보험 가입처 링크: https://www.moph.gov.qa/english/departments/policyaffairs/mid/hirs/insurancecompanies/Pages/default.aspx - 단, 일정조건 충족 조건 하 국제의료보험도 인정하며, 입국시 사본 제출 (상세 내용 주카타르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참고 요망)
	팔레스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스라엘 입국절차와 동일 ※ 백신접종여부 무관 외국인 입국 전면 허용 ※ COVID-19를 포함하고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증서 필수 제출

구분	조치사항
가나	<p><코토카 국제공항 입국 검역 지침(2023.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나 식약청 및 WHO 인증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18세 이상 입국자는 출발 국가에서의 코로나 검사 결과 제출 의무를 면제받으나, 공항 입국시 선별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중국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검사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공항 도착 후 코로나 검사 시행(무료) 백신 접종 미완료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검사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공항 도착 후 코로나 검사 시행(무료) * 가나 식약청 인증 백신(Astra Zeneca, Sputnik-V, Pfizer, Moderna(2회 접종)/Johnson & Johnson(1회 접종)외 WHO에서 인증한 백신(COVAXIN, BBIBP-CorV, CoronaVac, COVAVAX, NUVAXOVID) 인정 출발일로부터 14일 이전에 WHO 인증 백신별 필요 접종 횟수를 완료한 경우, https://trustedtravel.panabios.org 또는 www.globalhaven.org 사이트를 통해 사전 백신 정보 및 백신 접종 증명서(카드)를 업로드 후 백신 코드와 패스를 항공기 탑승 및 공항 입국 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상기 사이트를 통해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를 업로드 입국전 건강신고서(Health Declaration Form)를 ghs-hdf.org 사이트에 접속, 사전 입력 후 증명서(TRAVEL CERTIFICATE)를 발급받은 다음 항공사와 공항 입국 시 제출 코토카 공항 관련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이집트	<p>20.7.17부터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니 행 항공기 탑승(입국/경유 포함) 전 온라인 사증 신청 및 현지 대리인을 통해 국경경찰에서 발행한 입국 허가증 발급 지침 필수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시, 코로나19 백신 별 권장횟수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소지한 승객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인정 기준 : AZ, 화이자,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V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 안센(접종완료 후 28일 경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에 미달한 경우, 기니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입국 기준 6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경우, 최초 확진 및 완치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승객은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없이도 입국 가능
기니	<p>20.7.17부터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니 행 항공기 탑승(입국/경유 포함) 전 온라인 사증 신청 및 현지 대리인을 통해 국경경찰에서 발행한 입국 허가증 발급 지침 필수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시, 코로나19 백신 별 권장횟수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소지한 승객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인정 기준 : AZ, 화이자,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V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 안센(접종완료 후 28일 경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에 미달한 경우, 기니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입국 기준 6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경우, 최초 확진 및 완치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승객은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없이도 입국 가능
기니비사우	<p>기니 비사우 입국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기준 최소 4주 전에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부스터샷 제외)한 경우, 접종 증명서 제시 또는, RT-PCR 검사 음성 결과서 제시(서아프리카 경제 통화 연합국 UEMOA* 출발 입국자는 출발 기준 5일 이내, 유럽 대륙 소재 국가 및 기타 국가 출발 입국자는 출발 기준 3일 이내,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UEMOA 8개국 :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 기니비사우 또는, 도착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제시 <p>기니 비사우 출국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지 국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혹은 RT-PCR 검사 음성 결과서 제시 <p>※ 입국에 필요한 상기 증명서 등 미 제출 시 공항내에서 PCR 검사를 받게됨(비용 : 25,000 XOF), 공항 내에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등 개인위생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검사 및 최대 10일 간 격리하게 될 수 있음.</p> <p>※ 12세 미만 아동은 상기조치 미적용</p>

구분	조치사항
남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72시간 전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입국 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입국 목적(관광, 친지 방문 등에 부합하는 초청장 등을 제시 필요
니제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을 통한 출입국 재개(20.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 시 72시간 이내(검체채취일 기준)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UEMOA 가입국발 승객들에 한해, 5일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허용 유증상자는 신속항체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 시 PCR 검사 실시 니제르 거주자는 7일간 자가격리 실시(2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락 가능한 장소에서 자가격리 실시 필요, △격리 시작 시 경찰당국이 입국자의 여권을 회수하고 격리 종료 시 반환, △격리 7일째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시 격리 종료 출장 등 목적의 13일 이하 단기 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불요하나 방역조치 준수 및 출국 항공권 소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일 이상 체류 시 7일째 정부지정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말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외국인 대상 아래 방역조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국 시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접종 증명서 지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신접종 증명서 미지참 혹은 제출 불가시 현장에서 백신예방접종을 한다는 전제 하에 입국을 허가하거나, 자부담으로 10일간 시설격리 실시 후 입국 가능 상기 음성확인서에 대하여 Trusted Travel(https://trustedtravel.panabios.org)에서 디지털코드를 발급 또는 글로벌હે븐(www.globalhaven.org)에 접속하여 PCR 영문 음성확인서(스캔 또는 사진촬영본) 업로드 후 부여되는 디지털코드 제출 PCR 음성확인서 등의 서류 미제출 시 현장에서 자부담으로 코로나19 항원검사를 진행하며, 양성 결과 확인 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시설격리 등 실시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21.4.26.부터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브라질 출발 여행자 입국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국가에서 출발했다라도 필수 목적(외교관, 필수 의료목적 등) 입국자는 예외적 입국 허용 상기 예외적 입국자는 △정부지정 시설에서 14일 격리(자부담), △도착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지 지침 필수
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7.2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출입국 및 경유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국 요건)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후 검사 진행 /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혹은 호텔격리(비용 자부담) (출국 요건) △공항 및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체온 38도 이하 및 코로나19 무증상자만 항공기 탑승 가능 (경유 요건)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발열 체크, △숙박 경우 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위생수칙 준수
모리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7.1.부터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출발 전 입국정보와 건강상태 입력 및 QR 코드 수령하여 입국 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s://safemauritius.govmu.org

구분	조치사항
모잠비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국시 도착 국경/공항에서△유효한 코로나19백신 접종증명서 제시 또는 출발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판정 확인서(PCR 검사)제출 , △11세이하 영유아는 상기 백신증명서 및 음성결과서 제출 면제, △입국시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나 PCR 음성결과서 미소지 시 국경/공항에서 자비부담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결과 확인 시 모잠비크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에 취해짐 (자부담), △입국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여행객 등 입국장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의무, △모잠비크 단기여행자나 경유 목적 체류자의 경우 제출 인정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7일(샘플채취 기준) ※ WHO에 의해 승인된 백신(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등)의 완전한 접종 필요(화이자/모더나)등 2차 접종 완료, 얀센 1차 접종 완료)
민주콩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8.15부터 국경봉쇄조치 해제 ※ 입출국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하며, △모든 승객에 대해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측정, 감염문진표 작성 ※ 백신접종 완료자는 입국 후 추가 PCR 음성확인서 전면폐지, 미접종자는 입국 후 공항에서 자부담으로 PCR 검사 실시
보츠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입국허가 요건 (22.3.18) ※ (접종완료자) 유효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필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불필요, ※ (접종미완료자) 출발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입국 시 본인 부담으로 코로나 검사 실시 ※ 코로나 양성 판정시에는 본인 부담으로 14일간의 격리 필요 * WHO에 의해 승인된 백신(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등)의 완전한 접종(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완료, 얀센 1차 접종 완료) 및 부스터샷 접종 불필요
부르키나 파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을 통한 출입국 재개(20.8.1) ※ △입국 시 5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자의 경우 일상활동 가능하며, 입국일로부터 8일째, 14일째 날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권고, △코로나19 유증상자(체온 38도 이상) 또는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신속항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90,000CFA비용 자부담) ※ 음성확인서 미소지 입국자의 경우 PCR 검사 시행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지정 시설 격리
상투메 프린시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7.16.부터 코로나19 대응 3단계 완화 조치 시행하여 상업 항공 운항 재개 허가 및 상투메프린시페 내 섬 지역간 이동(항공 및 선박) 허가 ※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시, 음성인 경우 별도 격리 불요
세이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2.1부터 코로나19 관련 입국요건 해제 ※ 단, 입국 시 세이셸 여행허가증(Travel Authorization) 온라인 신청(seychells.govtas.com) 후 입국 가능 - 신청 시 △항공권 예약 확인증, △숙박 예약 확인증, △건강보험 등 필요

구분	조치사항
시에라리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출발 전 시에라리온 여행 포털(www.travel.gov.sl) 에 입국정보 등록 필수 * 시에라리온 여행포털(www.travel.gov.sl)에서 입국정보 입력 후 여행허가서류 (Traveler 's Authorization) 홈페이지에서 발급 *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전, 도착 후 PCR 검사 불필요(12세 이상의 모든 여행자는 출발 14일전 접종 권장) ▶ (입국 후) 백신 미접종자, 부분 접종자에 한해 도착 후 공항 내 PCR 검사 필수
앙골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앙골라 입국시, 출국 기준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검사결과(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앙골라 출국시, 코로나19 백신 완전접종증명서(2차접종 완료, 영문/포르투갈어) 제시 필요
에리트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승객은 입국시 입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항에서 모든 승객들에 대한 PCR 검사 실시 -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후 재검사 실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3일(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영문) 제출 ※ 입국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체온 검사, 개인소지품 소독, 설문지 작성 등 조치 시행
지부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9.15부터 출입국 관리 조치 변경(대통령령) ※ (지부티 입국 시) - 백신 접종(2차 접종) 증명서 소지자 :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됨. - 백신 접종(2차 접종) 증명서 미소지자 : 출발일 기준 3일(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PCR 음성확인서가 없을 시, 지부티 공항 내 검사소에서 PCR 검사 필요 (검사비 : 30 USD) ※ (지부티 출국 시) - 백신 접종(2차 접종) 증명서 소지자 : 출국 가능 - 백신 접종(2차 접종) 증명서 미소지자 : 행선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입국 규정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 요구 시,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요구사항이 없을 시,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없이도 출국 가능
짐바브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3.30.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폐지 - WHO에서 인정하는 2차 백신접종 완료 혹은 3차 접종완료자에 해당 - 영문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입국시 확인 ▶ 2022.3.30.부터 코로나19 백신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발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입국 후 증상이 있거나 재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자부담 자가격리 실시 ※ 20.10.1.부터 관광 및 사업 목적 등 기존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 상기와 같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였으나, 실제 현장 상황이 다른 경우가 수차례 있었던 바, 당분간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는 것이 문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구분	조치사항
차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 제출 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영문) 제출, 마스크 착용 필수 - 상기 서류 미제출시 벌금(40,000세파=약70USD) 부과
케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8.1.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 케냐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 및 여행객은 별도로 격리는 없으나, 케냐 입국 단계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출발 72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 중 하나를 필히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은 접종 필요 횟수(2회, 안센은 1회)를 모두 맞아야 하며, 2차 접종일(안센은 1차 접종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 케냐에 도착해야 함. - 백신접종증명서는 www.globalhaven.org 사이트에 업로드(Begin Validation → Sign in → Upload Vaccine record → Report Vaccination 메뉴 이용) 후 생성되는 QR코드를 저장하여 제시 - PCR 음성확인서는 www.globalhaven.org 사이트에 업로드(Begin Validation → Sign in → Validate Test for Travel 메뉴 이용 / 한국에서 진행한 PCR 검사는 at any other lab에 해당) 후 생성되는 QR코드를 저장하여 제시 ※ 만 12세 미만 여행객은 제출 의무 면제 ※ 모든 여행객 중에서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케냐 보건부 홈페이지(https://ea.rs.health.go.ke/airline_registration)에 접속, Register for a new travel을 작성한 후 전송받은 QR코드를 케냐 공항 입국 시 제공(핸드폰 저장 사진 또는 출력물)하고, 신속항원검사를 자비(미화 30불)로 받아야하며, 양성인 경우 자가 격리 및 추가비용(미화 50불) 지불하고 추가 PCR 검사 및 자가격리 의무 ※ 케냐 입국 시 비자 발급은 e-visa만 가능(21.1.1.부터 도착비자 발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evisa.go.ke를 통해 발급 필요
코모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접종완료자의 경우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불요. 단,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72시간 안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필요 * 백신접종 완료자: 2차 접종 완료자, 안센 등 1회만 요구하는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인정) * 만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격리 없음
콩고 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편을 통한 외국인 입국 허용(육로 및 해로를 통한 국경 통과 금지) ▶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불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72시간 전 PCR 음성확인서 제시 필요 ※ Health and Immigration declaration Form 작성 필요
코트디부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항공편 운항 재개 및 입국 허용(20.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백신 미접종자 내지 미완료자의 경우 입국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 (기준) 48시간 → (변경) 72시간 (감체 채취일 기준) ▶ 출입국 및 환승 시 항공여행 증명서 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여행 증명서) 홈페이지(deplacement-aerien.gouv.ci)에 접속하여 인적 사항 및 항공편 정보 입력(입국시 수수료 2,000 FCFA, 출국 시 수수료 25,000 FCFA 지불/ 출국 시 항공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에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포함) - 현재 모든 승객은 입국 직후 입국장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무상)

구분	조치사항
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입국자에 대해 7일 이내 검사받은 COVID-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온라인 입국신고서에 별도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24시간 이전에 온라인 입국신고서(https://voyage.gouv.tg/checkphone) 작성 (로메공항 입국시 실시할 의무 COVID-19 PCR 검사 신청, 비용 선지급 및 영수증 필수 지참) 완료 필요 ※ 입국 이후 공항에서 COVID-19 PCR 검사 의무 실시, TOGO SAFE 모바일 앱을 설치(30일간)하고 숙소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24시간 이내 email 또는 문자메시지로 송부)가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 실시 ※ 21.11.29.부터 남아공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72시간 자가격리 의무 ▶ 선박 선원에 대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입국전 5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입국 72시간 이내 온라인(http://www.voyage.gouv.tg)에서 검사예약 및 비용결제, △토고정부 지정 선박 agent를 통하여 검사소로 이동 , △코로나 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입국 허용 ※ (출국) 출국전 5일 이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 5월 17일부로 육·해상 국경 개방 ▶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제출 시 자가격리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 ※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밀출 국가는 비셴겐협약 가입국)
- ※ **셴겐협약 가입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밀출 국가는 비EU 회원국)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 106개 국가·지역

※ 출발 전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치 해제 국가·지역(해제 시기)
미주(15)	코스타리카 ³³ , 자메이카 ³² , 쿠바 ³¹ , 그레나다 ³⁰ , 트리니다드토바고 ³⁰ , 과테말라 ²⁹ , 파나마 ²⁹ , 캐나다 ²⁹ , 가이아나 ²⁹ , 에콰도르 ²⁹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²⁷ , 바베이도스 ²⁸ , 페루 ²⁸ , 앤티가바부다 ²⁸ , 엘살바도르 ²⁸
중동(10)	바레인 ¹ , 오르단 ² , 사우디아라비아 ³ , 쿠웨이트 ³ , 오만 ³ , 이집트 ⁴ , 레바논 ⁴ , 모로코 ⁴ , 아랍에미리트 ⁴ , 튀니지 ⁴
유럽(48)	노르웨이 ⁴ , 슬로베니아 ⁵ , 아이슬란드 ⁶ , 헝가리 ⁷ , 아일랜드 ⁸ , 루마니아 ⁹ , 영국 ¹⁰ , 폴란드 ¹¹ , 스웨덴 ¹² , 덴마크 ¹³ , 라트비아 ¹⁴ , 스위스 ¹⁵ , 슬로바키아 ¹⁶ , 몬테네그로 ¹⁷ , 체코 ¹⁸ , 불가리아 ¹⁹ , 키르기스스탄 ²⁰ , 그리스 ²¹ , 크로아티아 ²² , 아르메니아 ²³ , 알바니아 ²⁴ , 세르비아 ²⁵ , 벨기에 ²⁶ , 사이프러스 ²⁷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²⁸ , 벨라루스 ²⁹ , 이탈리아 ³⁰ , 독일 ³¹ , 튀르키예 ³² , 카자흐스탄 ³³ , 우즈베키스탄 ³⁴ , 에스토니아 ³⁵ , 조지아 ³⁶ , 핀란드 ³⁷ , 포르투갈 ³⁸ , 프랑스 ³⁹ , 네덜란드 ⁴⁰ , 룩셈부르크 ⁴¹ , 러시아 ⁴² , 스페인 ⁴³ , 몰타 ⁴⁴ , 몰도바 ⁴⁵ , 북마케도니아 ⁴⁶ , 모나코 ⁴⁷ , 리투아니아 ⁴⁸ , 리히텐슈타인 ⁴⁹ , 타지키스탄 ⁵⁰ , 오스트리아 ⁵¹
아·태(16)	몽골 ¹¹ , 호주 ⁹ , 말레이시아 ⁸ , 브루나이 ⁷ , 쿡 제도 ⁶ , 사모아 ⁵ , 태국 ⁴ , 바누아투 ³ , 파푸아뉴기니 ² , 캄보디아 ² , 라오스 ² , 스리랑카 ² , 베트남 ² , 아프가니스탄 ² , 싱가포르 ² , 피지 ²
아프리카(17)	가봉 ¹⁵ , 남아공 ¹⁶ , 베냉 ¹⁷ , 르완다 ¹⁸ , 수단 ¹⁹ , 마다가스카르 ²⁰ , 나미비아 ²¹ , 카보베르데 ²² , 에스와티니 ²³ , 세네갈 ²⁴ , 에티오피아 ²⁵ , 감비아 ²⁶ , 부룬디 ²⁷ , 탄자니아 ²⁸ , 잠비아 ²⁹ , 적도기니 ³⁰ , 우간다 ³¹

① 바레인

▶ 22.2.20.부터 모든 바레인 방문객에 대해 입국 시 공항에서 요하던 도착 PCR 검사 및 관련 격리 지침 폐지

② 오르단

▶ 22.3.1.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출발 전, 도착 후 PCR 진단검사 면제 (모든 국경에 대해 적용)

※ 출발 전 입국 정보 입력 및 QR코드 수령하여 항공기 체크인 시 제시 <https://www.gateway2jordan.gov.jo>

③ 사우디아라비아

▶ 22.3.5.부터 입국제한 조치(음성확인서, 입국 이후 PCR 검사 등) 폐지한 및 입국제한 국가 폐지, 입국 후 자가 격리 의무 없음. (다만, 코로나 19 확진시 발생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 필요)

④ 노르웨이

▶ 22.2.12.부터 기존 입국제한 조치(사전등록, 음성확인서 제출, 입경지점 검사, 격리 의무) 모두 폐지

⑤ 슬로베니아

▶ 22.2.19.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자가격리 등 의무 없음

※ 다만, 여행 당시 코로나19 상황 및 입국제한 규정 변동사항 등 사전 확인 권장.

⑥ 아이슬란드

▶ 22.2.25.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⑦ 헝가리

▶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⑧ 아일랜드

▶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⑨ 루마니아

▶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⑩ 영국

▶ 22.3.18.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지침 준수 의무 종료.

▶ 23.1.5.부터 23.4.4. 23:59까지 만 12세 이상 중국 본토발 잉글랜드 지역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출국 48시간 이내) 제출 의무(직항 및 경유 포함)

- 음성확인서 인정 유형 : 출력된 문서 혹은 휴대전화에 표시 가능한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영어, 불어, 스페인어 인정)
-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 사항 : 성명, 생년월일(또는 나이), 검사 결과, 검체채취 일시, 검사기관의 이름과 연락처 (영국 공공의료서비스(NHS)에서 검사하고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는 불인정) 및 검사방법(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⑪ 몽골

▶ 22.3.14.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신속항원검사결과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⑫ 폴란드

▶ 22.3.28.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⑬ 가봉

▶ 22.3.28.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⑭ 덴마크

▶ 22.3.29.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⑮ 스웨덴

▶ 22.4.1.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⑯ 라트비아

▶ 22.4.1.(금)부터 라트비아 입국제한조치 완화

-라트비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대상 입국제한조치 폐지(고위험 국가 제외)

-고위험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EU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 19음성확인서(PCR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 제출 필수(단, 12세 미만 어린이, 운송업 및 여객 운송업 직원, 24시간 내 경유자,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시민 및 가족은 예외)

⑰ 스위스

▶ 22.4.1.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⑱ 슬로바키아

▶ 22.4.6.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⑲ 코스타리카

▶ 22.4.1.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 23.1.9.부터 중국, 홍콩, 대만, 미카오발 입국자 및 최근 14일 내 해당지역 방문자 대상 입국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또는 항원 테스트 음성결과지(영문 또는 스페인어) 및 백신접종증명서(12세 이상)를 소지해야 함.

⑳ 몬테네그로

▶ 22.4.9.부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별도 코로나 증명서류 없이 몬테네그로 입국 가능

㉑ 체코

▶ 22.4.9.부 외국인 입국 제한 및 코로나19 감염 증빙 의무 전면 해제

▶ 23.1.31.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 해제

㉒ 자메이카

▶ 2022.4.15.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㉓ 불가리아

▶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㉔ 키르기스

▶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㉕ 쿠웨이트

▶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㉖ 그리스

▶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㉗ 크로아티아

▶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㉘ 아르메니아

▶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㉙ 알바니아

▶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㊱ 세르비아

▶ 2022.5.3.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㊲ 쿠바

▶ 2022.4.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㉚ 오만

▶ 2022.5.23.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㉛ 벨기에

▶ 2022.5.24.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㉜ 사이프러스

▶ 2022.6.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㉝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2022.5.2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㉞ 벨라루스

▶ 2022.5.28.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㉟ 이탈리아

▶ 2022.6.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그레나다

▶ 2022.4.4.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㊱ 독일

▶ 2022.6.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단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여전히 존재

㊲ 튀르키예

▶ 2022.6.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㊳ 카자흐스탄

▶ 2022.6.8.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㊴ 우즈베키스탄

▶ 2022.6.7.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㊵ 에스토니아

▶ 2022.6.18.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㊶ 이집트

▶ 2022.6.1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㊷ 조지아

▶ 2022.6.15.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㊸ 트리니다드토바고

▶ 2022.7.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㊹ 핀란드

▶ 2022.7.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㊺ 남아공

▶ 2022.6.22.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㊻ 포르투갈

▶ 2022.7.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㊼ 호주

▶ 2022.7.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㊽ 베트남

▶ 2022.7.18.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㊾ 프랑스

▶ 2022.8.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㊿ 르완다

▶ 2022.7.29.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수단

▶ 2022.8.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말레이시아

▶ 2022.8.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2022.12.30.부터 모든 말레이시아 입국자 발열(체온) 검사 실시,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코로나19 항원검사 실시(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름)

㋂ 마다가스카르

▶ 2022.8.1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과테말라

▶ 2022.8.12.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나미비아

▶ 2022.8.2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브루나이

▶ 2022.9.15.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파나마

▶ 2022.9.15.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카보베르데

▶ 2022.9.15.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쿡 제도

▶ 2022.9.9.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입국 후 코로나 확진 시 숙소에서 7일 자가격리 필수

㋉ 사모아

▶ 2022.9.22.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레바논

▶ 2022.9.28.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캐나다

▶ 2022.10.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모로코

▶ 2022.10.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2023.1.3.부터 국적불문 중국발 모로코 입국 금지(중국에서 출국한 지 7일 경과했을 경우 모로코 입국 가능)

㋍ 태국

▶ 2022.9.30.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비누아투

▶ 2022.9.1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파푸아뉴기니

▶ 2022.10.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네덜란드

▶ 2022.9.17.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룩셈부르크

▶ 2022.10.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캄보디아

▶ 2022.10.3.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⑬ **가이아나**
 - ▶ 2022.10.7.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 2023.1.8.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발 모든 입국자(2세 이상)는 출발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 출발 10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진된 자는 코로나 회복증명서로 대체 가능
- ⑭ **에콰도르**
 - ▶ 2022.10.20.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⑮ **러시아**
 - ▶ 2022.10.2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⑯ **스페인**
 - ▶ 2022.10.21.부터 한국발 스페인 입국자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 2022.12.13.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⑰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 2022.9.18.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⑱ **비베이도스**
 - ▶ 2022.9.22.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㉑ **몰타**
 - ▶ 2022.7.25.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 2023.1.9.부터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항원검사(입국전 48시간 이내 실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 만 11세 미만 아동은 위 사항 적용 제외
- ㉒ **몰도바**
 - ▶ 2022.4.1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㉓ **페루**
 - ▶ 2022.10.27.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㉔ **북마케도니아**
 - ▶ 2022.4.20.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㉕ **모나코**
 - ▶ 2022.8.12.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㉖ **앤티가바부다**
 - ▶ 2022.8.2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㉗ **에스와티니**
 - ▶ 2022.11.9.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㉘ **아랍에미리트**
 - ▶ 2022.11.10.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㉙ **세네갈**
 - ▶ 2022.11.10.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㉚ **에티오피아**
 - ▶ 2022.10.28.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㉛ **튀니지**
 - ▶ 2022.12.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㉜ **감비아**
 - ▶ 2022.12.13.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㉝ **라오스**
 - ▶ 2022.12.23.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㉞ **스리랑카**
 - ▶ 2022.12.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 다만, 일부 항공사 및 경유 국가 이용 시 PCR 결과지를 요구 할 수 있음.
 - ※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외국인 또는 관광객은 병원/호텔/거주지에서 7일간 격리
- ㉟ **부룬디**
 - ▶ 2023.1.4.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㊱ **리투아니아**
 - ▶ 2022.5.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㊲ **엘살바도르**
 - ▶ 2021.11.17.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㊳ **리히텐슈타인**
 - ▶ 2022.5.2.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㊴ **베트남**
 - ▶ 2022.5.15.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㊵ **아프가니스탄**
 - ▶ 2022.5.10.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 ㊶ **탄자니아**
 - ▶ 2023.1.12.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㊷ **싱가포르**
 - ▶ 2023.2.13.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㊸ **타지키스탄**
 - ▶ 2023.2.8.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㊹ **피지**
 - ▶ 2023.2.14.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㊺ **오스트리아**
 - ▶ 2022.5.1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㊻ **잠비아**
 - ▶ 2023.3.22.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㊼ **적도기니**
 - ▶ 2023.3.24.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㊽ **우간다**
 - ▶ 2023.3.7.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끝.